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의 견 서

(남궁역 의원)

2024. 2.

푸른도시여가국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사안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59호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 시,
이식된 수목을 녹화사업에 제공할 경우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 회사, 단체, 법인이 참여하는 녹지의 실명관리 시,
협약을 체결하여 실명관리자 지정 및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국 검토의견은 '원안동의' 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